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서(안)

신 청 인 1. 신

2. 신

3. 신

사 건 본 인 평산신씨전참공파종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33 (망우동, 용마승마클럽)

도유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신

신 청 취 지

1. 사건본인 평산신씨전참공파종중(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33)의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로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
2. 위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에 대하여 종중대표기관 공백 해소를 위한 종중재산의 현상 보전·관리 업무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과 종중규약의 개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
3. 위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에 대하여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한 종원범위의 확정, 종중규약개정안의 정비, 소집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부수적 업무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본인 종중의 성격 및 현황

사건본인 평산신씨전침공파종중(이하 “사건본인 종중”이라 합니다)은 평산신씨 시조 신승겸의 후손 중 17세 전침공 신말평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517년의 역사를 지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입니다. 사건본인 종중의 하위종중으로 경력공, 평주부원군, 진사공 종중이 있고, 경력공 종중의 하위종중으로 지평공, 풍천공, 백은공 종중이, 평주부원군 종중의 하위종중으로 충헌공, 장령공, 충장공, 수어사공 종중이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사건본인 종중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5길 33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동 소재 부동산 및 예금 등 상당한 규모의 총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1호증). 사건본인 종중은 선조 봉행, 종중재산의 보전·관리, 종원 사이의 공동체적 사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적법한 대표기관의 존재가 그 정상적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2. 본안판결의 확정과 대표기관 공백의 발생

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경과

사건본인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종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신청 외 전 도유사 신락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2. 16.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89 임원 등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신락현은 평산신씨전침공파종중 도유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신락현은 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030호), 항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0618호) 및 재항고(대법원 2024마7427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직무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소갑 제1호증 제5면 각주 2 참조).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3. 13. 변호사 김신을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기

간 동안” 사건본인 종중의 도유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 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민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종중의 통상사무에 한정되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직무대행자는 본안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 및 이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에 관하여도 법원의 상무외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비합1014호, 2026. 5. 6.자 결정, 소갑 제6호증). 즉 사건본인 종중은 이미 2024년 이래 법원의 사법적 관리 아래에서만 최소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잠정적 체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나. 본안판결의 확정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2025. 1. 16. 사건본인 종중의 도유사, 부도유사, 유사 및 대의원 전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6. 4. 24. 변론종결일 전에 사망하거나 대의원 직을 사임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 6명에 대한 청구 부분만을 각하하고, 나머지 도유사, 부도유사, 유사 및 대의원 전원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은 취지로 그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205760호, 소갑 제2호증). 위 각하 부분 역시 해당 종원들이 사망 또는 사임으로 이미 그 직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 의하더라도 사건본인 종중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를 현재 보유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본인 종중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6다203965호), 대법원은 [2026. ○. ○.]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나의 사건검색 캡처).

다. 대표기관 공백의 발생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주문은 그 효력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직무대행자 선임결정 역시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도유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본안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 종중에는 현재 종중을 대표할 도유사도, 그 직무대행자도, 임원회의를 구성할 임원도, 총회를 구성할 등록 대의원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적법하게 종중을 대표하거나 종무를 처리할 대표기관 내지 업무집행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3. 민법 제63조의 유추적용 및 이 사건 요건의 충족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민법 제63조가 유추 적용될 수 있고,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사원 등이 포함되며, “손해가 생길 염려”란 통상의 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가.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해당성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종중 종원으로서 봉제사, 종무 운영, 충유재산의 보전·관리 및 적법한 대표기관의 회복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신청인들 외에도 사건본인 종중 종원인 [신○○ 외 ○○인]은 본 사건 신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0호증).

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의 결원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에 따라 사건본인 종중의 도유사, 부도유사, 유사 및 대의원 전원의 지위 부존재가 확정되었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던 도유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역시 확정과 동시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 종중에는 대표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완전한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통상의 절차에 따른 대표자 선임의 곤란

아래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본인 종중은 규약상 절차에 의하든, 관습상 연고향존자의 소집에 의하든,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의하든, 통상의 절차만으로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합니다.

라. 손해 발생의 염려

사건본인 종중은 부동산 및 예금 등 상당한 총유재산을 보유하고 있고(소갑 제11호증), 그 관리와 관련하여 세금·공과금의 납부, 임대차 관리, 금융기관 업무, 행정기관 신고, 소송상 대응 등 계속적 사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위 사무를 처리할 주체가 없어 재산관리의 공백, 납부기한의 도과, 소송상 불이익, 대외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특히 직무대행자 체제에서조차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소갑 제6호증), 그 직무대행자마저 소멸한 현재의 사무 공백은 더욱 중대합니다.

또한 종중의 본래 목적 사무인 시제(매년 음력 10월 2일, 2026년의 경우 양력 11월 11일) 등 선조 봉행, 규약의 정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종원들에 대한 통지·보고 업무가 모두 중단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적 불편을 넘어 사건본인 종중과 전체 종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내부규약에 따른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사정

가. 2024년 개정 규약의 효력에 관한 중대한 하자

사건본인 종중에는 2003. 2. 23. 개정된 규약(이하 “2003년 규약”이라 합니다, 소갑 제7호증)과 이를 기초로 2024. 2. 25. 다시 개정된 규약(이하 “2024년 규약”이라 합니다, 소갑 제8호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24년 규약은 2024. 2. 16. 직무집행이 정지된 도유사 신락현이 가처분 결정 전인 2월 초에 소집해 놓았던 총회를 부도유사 신흥현이 별도의 소집통보 없이 개최한 총회를 기초로 하고, 확정판결로 지위부존재가 확인된 종전 임원·대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한 것이어서 그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신청은 2024년 규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효력에 중대한 다툼이 존재하고 어느 규약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사건본인 종중이 내부절차만으로 대표기관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항소심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2024년 규약에 의하더라도 각 지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하므로(2024년 규약 제12조, 제18조 제8호, 소갑 제2호증 제15면 참조), 아래에서 보는 구조적 문제는 어느 규약에

의하든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나. 2003년 규약의 성립 정당성에 관한 중대한 의문

2003년 규약 부칙 제2조는 “본 규약 개정사항은 필히 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무대행자 김신 변호사는 종원들의 요청에 따라 2003년 규약 개정에 관한 회의록 또는 결의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6. 6. 26. 해당 회의록 또는 결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소갑 제9호증). 이는 2003년 규약이 스스로 정한 정당성 확보 절차의 이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적법한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중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다. 2003년 규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규약상 총회 개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설령 2003년 규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확정판결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전원의 지위 부존재가 확정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째, 총회는 임원과 각 지파에서 선출하여 종중에 등록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2003년 규약 제11조), 총회는 원칙적으로 도유사가 소집합니다(같은 규약 제14조 제3항). 그러나 적법한 도유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규약이 예정한 정상적인 총회 소집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새로운 대의원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임원회의의 심의가 필요한데(같은 규약 제12조 제2항), 임원회의는 도유사·부도유사·유사로 구성됩니다(같은 규약 제17조 제1항). 위 임원 전원의 지위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적법한 임원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대의원의 등록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도유사를 선출하려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같은 규약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총회를 구성할 적법한 임원 및 등록 대의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규약상 절차만으로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할 총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임기만료 후 직무계속 조항도 적용될 수 없음

2003년 규약 부칙 제4조는 “본 종중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의 임기만료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확정판결은 종전 임원·대의원들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선출 절차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입니다(소갑 제1, 2호증). 따라서 계속 수행할 전임자의 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5. 연고항존자에 의한 총회 소집 등 관습상 소집방법에 의하더라도 대표기관 공백을 해소할 수 없음

가. 문제의 소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나 규약상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중의 관습에 따라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의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본인 종중의 경우 이러한 관습상 소집방법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고 안정적인 총회의 개최와 대표자의 선출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합니다.

나. 확정된 종원명부가 존재한 바 없어 연고항존자의 특정 자체가 불가능함

연고항존자란 생존하는 종원 중 향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를 의미하므로, 이를 특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전체 종원의 범위와 각 종원의 향렬·연령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중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도 확립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소갑 제1호증 제7면 참조).

그러나 사건본인 종중에는 창립 이래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원명부가 존재한 바 없고, 역대 임원의 선출 역시 확정된 종원명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건본인 종중은 대의원제를 채택하여 전체 종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하위종중들이 관리하여 온 종원명부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은 본안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향소심 법원은 진사공 종중이 제출한

종원명부에 관하여 “족보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확정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판시하였고(소갑 제2호증 제11~12면), 지평공 종중(명부상 245명 중 38명에게만 통지), 풍천공 종중(140명 중 112명), 백은공 종중(577명 중 552명), 충장공 종중(1,022명 중 973명), 장령공 종중(76명 중 62명)의 각 소집통지 누락, 충헌공 종중의 소집통지 증거 부재, 나아가 수어사공 종중의 경우 “소집 대상자를 확정할 종원 명단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는 사정을 각 인정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제13~15면).

이와 같이 종원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중 향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자가 누구인지 역시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사건본인 종중 내부에서는 연고향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본안판결에서 하위종중인 평주부원군 종중의 연고향존자로 언급된 신○○는 2021. 10. 28.경 “19세 이상 남자 종원임을 증명”한 종원만이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함으로써 여성 종원의 참여권을 배제한 장본인이고(소갑 제1호증 제12~13면), 그 자신의 사건본인 종중 대의원 지위 부존재 역시 확정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소갑 제2호증 별지 순번 제57번 및 각주 11 참조). 이처럼 연고향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로 거론될 만한 인사들 자체가 이 사건 분쟁의 대상이거나 하자 있는 절차의 관여자들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고향존자를 자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권한의 존부와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재연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다. 소집통지의 대상인 종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 본안판결 역시 바로 이 법리에 따라 하위종중들의 각 결의 및 추인결의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소갑 제1, 2호증).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종원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집통지의 대상인 종원의 범위조차 특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누군가 총회를 소집하더라도 소집통지 누락을 이유로 한 결의 무효 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 소결

결국 사건본인 종중은 ① 규약상 소집권자와 총회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규

약에 따른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고, ② 연고항존자의 특징과 종원 범위의 확정이 모두 불가능하여 관습상 소집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 역시 불가능하거나 그 결의의 효력이 필연적으로 다투어질 상태입니다. 이는 중립적인 제3자가 족보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종원명부를 조사·정비한 다음 이를 토대로 총회를 소집·주재하지 아니하는 한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교착상태입니다.

6. 민법 제70조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등 다른 수단으로는 대표기관 공백을 해소할 수 없음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민법 제70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어 소수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임시총회 소집허가만으로는 대표기관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첫째, 총회소집허가는 소집권한의 존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뿐, 위 제5항에서 본 종원명부 미확정의 문제, 즉 누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가라는 총회 성립의 전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소집허가를 받더라도 통지 대상과 의결권자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그대로 남고, 그 상태에서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다시 효력 분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하위종중들의 총회 결의와 추인결의가 바로 소집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이 부정되었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우려는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현실화된 위험입니다.

둘째, 사건본인 종중은 2023년 이래 임원 지위와 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수년간 분쟁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분쟁 당사자인 종원 일방이 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하는 총회는 그 의사진행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새로운 분쟁을 낳게 됩니다.

셋째, 대표기관 공백 상태에서는 총회 준비기간 중에도 종중재산의 보전·관리, 소송상 대응, 행정·금융업무 등 즉시 처리되어야 할 사무가 방치됩니다. 총회소집허가는 이러한 현재 진행 중인 사무 공백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종원명부의 조사·정비부터 총회의 소집·주재, 그리고 그 사이의 보존적 사무 처리까지를 중립적인 제3자가 일관되게 수행하는 것만이 결의의 안정성과 종중재산의 보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민법 제63

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의 선임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7. 감사 및 총무의 지위를 전제로 하더라도 공백은 해소되지 않음

종전 감사(소갑 제2호증 별지 순번 제74, 75번) 및 총무(같은 별지 순번 제76 내지 78번)의 지위에 관하여는, 본안소송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그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변경을 불허함에 따라(소갑 제2호증 제5~6면) 본안판결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그 지위의 존재가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지위 역시 지위 부존재가 확정된 종전 도유사 체제 아래에서 동일하게 하자 있는 절차에 따라 선출·지명된 것에 기초하고 있어 그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전 감사 신○○(위 별지 순번 제74번)는 대의원(순번 제57번)으로서의 지위 부존재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자와 동일인입니다(소갑 제2호증 별지 각주 11).

나아가 설령 감사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공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규약상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고(2003년 규약 제8조 제4항, 소갑 제2호증 제7면 참조), 감사의 예외적 총회소집권(2003년 규약 제14조 제3항 단서)은 도유사의 소집 부작위에 대비한 보충적 권한에 불과하여, 총회를 구성할 적법한 임원 및 등록 대의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총무는 규약상 대표기관이나 총회소집권자가 아니므로 총무만으로는 사건본인 종중을 대표하거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고, 특히 신청 외 신인현 총무는 지위 부존재가 확정된 종전 도유사 신락현이 지명한 자로서 그 지위의 존속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또는 총무의 지위를 어떻게 보더라도, 사건본인 종중은 내부의 통상절차만으로 대표기관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아가 사건본인 종중의 분쟁은 본안소송의 상고심판결 확정에 이른 현재까지도 종식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대법원 2026다203965호)의 원고 등 일부 종원들은 위 확정에 앞선 2026. 7. 13. **[종전]** 총무 신인현을 상대로 그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합20301호, 소갑 제12호증)와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같은 법원 2026카합20265호, 소갑 제13호증)을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사건은 현재까지 계속 중입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총무의 지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를 통하여는 사건

본인 종중의 대표기관 공백이 해소될 수 없음을 실증하는 것인 동시에, 종전 도유사 체제 아래에서 하자 있는 절차에 따라 선임·지명된 종전 임원·직원들의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 각 소송은 이 사건 신청인들 및 동참 종원들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원고 등 일부 종원들이 제기한 것으로서, 사건본인 종중의 분쟁이 신청인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종중 내부의 어떠한 자율적 수단으로도 이를 통제·해소할 수 없어 중립적인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의 선임이 더욱 긴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 선임의 필요성 및 직무범위

가. 중립적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건본인 종중은 202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임원 지위 및 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이 선임한 중립적 변호사가 도유사 직무대행자로서 종무를 관리하여 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종원을 곧바로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로 선임할 경우, 그 중립성과 기존 분쟁과의 관련성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공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인 변호사를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보수는 종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권한범위의 제한

이 사건에서 선임될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의 권한은 종중 운영 전반을 장기간 대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의 공백을 해소하고 사건본인 종중이 자율적 운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보존적 업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취지 제2항 기재의 별지 목록과 같이 종중대표기관 공백 해소를 위한 종중재산의 현상 보전·관리 업무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과 종중규약의 개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및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하여서는 종원범위의 확정, 종중규약개정안의 정비, 소집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부수적 업무 일체로 한다면 충분합니다.

9. 결론

이상과 같이 사건본인 종중은 본안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적법한 대표기관과 업무 집행기관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규약상 절차, 관습상 연고항존자의 소집,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등 어느 통상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스스로 대표기관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공백이 계속될 경우 종중재산의 보전·관리, 시제 봉행, 소송상 대응, 행정·금융업무의 처리 등에서 사건본인 종중과 전체 종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큼니다. 특히 본안소송의 상고심판결 확정에 앞서 이미 제기되어 현재까지 계속 중인 [중전] 총무의 지위를 둘러싼 별도의 소송(소갑 제12, 13호증)까지 존재하여 분쟁이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사정은, 사건본인 종중이 스스로 분쟁을 종식시킬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건본인 종중의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로 중립적인 변호사 1인을 선임하시고 그 보수는 종중이 부담하고, 선임된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의 직무범위를 대표기관 공백의 해소와 종중 정상화를 위한 절차적·보존적 업무로 한정하시어 구체적으로는 위 임시이사 겸 임시대표자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부 선출과 종중규약의 개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고, 위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한 종원범위의 확정, 종중규약개정안의 정비, 소집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부수적 업무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기한을 한시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 본안소송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89)

소갑 제2호증 본안소송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나205760)

소갑 제3호증 본안소송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6다203965)

소갑 제4호증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42)

- 소갑 제5호증 도유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합20242-1)
- 소갑 제6호증 상무외행위허가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6비합1014, 2026. 5. 6.자)
- 소갑 제7호증 2003. 2. 23.자 개정 종중규약
- 소갑 제8호증 2024. 2. 25.자 개정 종중규약
- 소갑 제9호증 전 직무대행자의 회의록·결의서 부존재 확인 자료(2026. 6. 26.)
- 소갑 제10호증 신청 동참종원 관련 자료(동참확인자 목록, 동참확인서, 족보)
- 소갑 제11호증 사건본인 종중의 총유재산(부동산·예금 등) 관련 자료
- 소갑 제12호증 나의 사건검색(총무 지위부존재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합
20301)
- 소갑 제13호증 나의 사건검색(총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카합20265)

2026. . .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